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판 결

사 건 2022고단1040, 1559, 2023고단966(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박덕만 (6\*\*\*\*\*-\*\*\*\*\*), 기타사업  
주거 구리시 ○○○○ ○○, ○○  
등록기준지 서울 ○○○ ○○○○○○○○ ○○  
검 사 김○현, 심○선(기소), 송○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권  
판 결 선 고 2024. 5. 29.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한다리길 29에 있는 해피엔딩빌딩을 본점으로 하는 해피엔딩 주식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4명을 고용하여 장례 및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고단1040』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2021. 8. 8.까지 장례도우미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유○○의 퇴직금 13,363,3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7,522,1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59』

피고인은 2018. 11. 19.부터 2022. 3. 29.까지 장례도우미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최○○의 퇴직금 7,851,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66』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22. 11. 30.까지 장례도우미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이□□의 퇴직금 17,312,0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75,473,3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일부 진술기재

1. 심주영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민원발생사례(교육자료), 장례복지사 근무수칙 확인, 각 모집공고, 퇴직금 산정내역서, 월별근무일수 및 지급액, 장례도우미 근무일수 및 지급액, 이체내역(뉴타운장례식장), 각 계좌별거래명세표(나○○, 김○○), 카카오톡 내용캡처본(교육), 명찰, 카톡내용캡처본(퇴근보고), 진정인별 금융거래내역, 진정인별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업장조직도, 해피엔딩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홈페이지 캡처사진

『2022고단15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일부 진술기재

1.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5)

1. 해피엔딩 장례복지사 근무수칙, 문자 메시지, 본인금융거래(입금), 최○○ 근무현황 내역·자료, 계좌이체내역

『2023고단966』

1. 증인 이□□, 김□□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김□□, 윤○○), 사업자등록증 등, 김□□·윤○○·이□□·채○○·김☆☆·박○○·노○○ 각 근무현황, 각 퇴직금 산정내역 및 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장례도우미의 근무태도로 인해 고객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근무수칙을 만들어 매월 장례도우미들에게 배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장례도우미들을 대상으로 판시 회사 본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

례식 전반의 운영과 절차를 주관하는 회사 소속 장례지도사를 통해 장례도우미들을 관리하였다. ② 장례도우미들의 근무 시간과 장소는, 피고인이 고객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장례식장의 위치와 장례일정을 실장 김○○에게 알려주면 김○○이 투입할 장례도우미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정된 장례도우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며칠 동안 투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투입된 장례도우미는 하루 기본 10시간 동안 장례식장에서 이탈할 수 없었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장례지도사에게 보고하였다. ③ 장례도우미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앞치마, 두건, 리본 등의 의류를 착용하고 근무하였다. 장례도우미들은 판시 회사의 근무수칙에 따라 고객 회사의 명찰을 패용하였다. 장례도우미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고, 실장 김○○이 다른 장례도우미를 지정하였다. ④ 장례도우미들의 보수는 사전에 정해진 시급과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되어 월 2회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었다. 한편 장례도우미들은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⑤ 판시 장례도우미들은 판시 회사의 소위 ‘메인’ 장례도우미로서 1년 내지 9년의 근무기간 동안 대부분 피고인이 주관하는 장례식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판시 장례도우미들은 가끔 다른 장례식장에서 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본인들의 의사라기보다 실장 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⑥ 실장 김○○은 구직사이트에 피고인 내지 판시 회사 명의로 장례도우미 모집공고를 냈고, 장례도우미들이 있는 채팅방에 판시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관한 공지를 올렸다. 김○○을 판시 회사와 무관하게 일회적인 용역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브로커만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판시 장례도우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

도11675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의 이유**

근로자 14명에 대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성○민 \_\_\_\_\_

[별지]

### 범죄일람표1

순번	성명	근무기간	퇴직금(원)
1	유○○	2015. 6. 10. ~ 2021. 8. 8.	13,363,311
2	권○○	2012. 2. 16. ~ 2021. 7. 16.	20,311,335
3	권□□	2015. 5. 1. ~ 2021. 6. 23.	12,146,238
4	김△△	2017. 10. 22. ~ 2021. 8. 15.	6,561,284
5	남○○	2018. 12. 1. ~ 2020. 1. 15.	1,712,422
6	이○○	2019. 2. 26. ~ 2020. 11. 17.	3,427,577
합계			57,522,167

## 범죄일람표2

순번	근로자	근무기간	퇴직금(원)
1	이□□	2015. 1. 1. ~ 2022. 11. 30.	17,312,311
2	윤○○	2016. 4. 1. ~ 2022. 3. 31.	14,670,000
3	김□□	2017. 1. 16. ~ 2022. 4. 11.	12,816,511
4	채○○	2018. 4. 1. ~ 2022. 11. 30.	11,611,350
5	김☆☆	2019. 3. 17. ~ 2022. 11. 30.	9,203,311
6	박○○	2019. 3. 28. ~ 2022. 11. 21.	5,667,480
7	노○○	2020. 1. 25. ~ 2022. 3. 25.	4,192,384
<b>합계</b>			<b>75,473,347</b>